



COVID-19 산업별 지침:

박물관, 갤러리, 동물원 및 수족관

2020년 7월 29일

모든 지침은 100,000명당 증례를 포함한 현지 역학 데이터 검토 후 카운티 보건 담당관의 승인과 검사 양성 비율, 의료 서비스 급증, 취약 인구, 접촉 추적, 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현지 대비에 따라서만 시행해야 합니다.



개요

2020년 3월 19일,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 담당관 및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부 디렉터는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에게 자택 체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COVID-19가 캘리포니아주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완전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알려진 질병은 매우 경증(일부 사람은 증상이 없음)에서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까지 이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 당뇨병과 같은 중대한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특정 집단은 입원 및 심각한 합병증을 겪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감염자에게 증상이 없거나 아직 증상이 발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였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함께 있는 경우 전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중요 인프라 업계 직원들을 비롯하여 산업별 또는 직업 그룹별 COVID-19의 감염자 수와 비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다수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직원들이 COVID-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장의 예로는 병원과 장기 요양 시설, 수감 시설, 식품 제조, 창고, 육류 가공 공장, 식료품점이 있습니다.

자택체류 명령이 수정됨에 따라, 직원과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요 예방 방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까지 물리적 거리두기
- ✓ 직원(호흡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및 손님/클라이언트/방문객의 얼굴 가리개(마스크) 사용
- ✓ 자주 손 씻기 및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 ✓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COVID-19 예방 계획 및 기타 예방 수칙 교육

또한, 직장 내 새로운 감염자를 식별하고, 식별 시 신속하게 개입하며 공공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중단시키는 적절한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

본 문서는 직원들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박물관, 갤러리,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및 기타 유사한 공간(이하 통칭하여 "박물관")을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참고: 본 지침은 놀이공원, 테마파크 또는 워터파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컨벤션 공간, 임대 가능한 회의실, 개인 행사를 위한 기타 장소가 있는 박물관은 대규모 모임이 특정 재개장 명령 및 지침을 통해 개편된 방식으로 또는 완전한 방식으로 운영을 재개하도록 허락될 때까지 해당 구역을 폐쇄해야 합니다. 가족 오락 활동(영화관 포함), 레스토랑(매점, 카페 등 포함), 소매 기념품점, 생명과학 연구실험실 등을 포함한 박물관 등은 해당 업계에 대한 지침을 코로나 19 복구 로드맵 웹사이트에서 참고해야합니다. 라이브 동물쇼 등의 공연은 중단하되, 예외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 및 위생프로토콜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콘서트 또는 개인 파티/이벤트 같은모든 대규모 행사나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법령이나 규제, 단체 교섭을 비롯하여 직원의 권리 일체를 취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운티 보건 명령을 포함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주 직업보건안전관리국(Californi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Cal/OSHA)의 규정과 같은 일체의 기존 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제 요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괄적인 것이 아닙니다. 1 COVID-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공공 보건 지침 및 주/지역 명령에 대한 변화에 대해 항상 최신 정보를 유지하십시오. Cal/OSHA는 COVID-19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Cal/OSHA 일반 지침 웹페이지에서 더욱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사업체 및 고용주들에 대한 지침 을 통해 추가적인 요건을 제공합니다.

안면 가리개 필수 사용

6월 18일, 캘리포니아주 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는 <u>안면 가리개 사용에 관한 지침</u>을 발표했으며, 이는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모든 공공 및 직장 환경에서 대중 및 직원 모두가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시민은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직장 밖에서 업무 수행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대중 속에서 사람들과 직접 상호 교류하는 경우
- 대중 속의 사람들이 업무 시점에 같은 공간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 속의 사람이 방문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음식이 준비되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포장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 시설과 같은 공용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런 곳을 걸어서 지나가는 경우
-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 없는 상황에서 방이나 밀폐된 공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개인의 가정이나 거주지 제외)
- 승객이 있을 때 대중 교통 또는 보조교통 차량, 택시, 자가용 서비스 또는 승차 공유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승객이 없을 때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모든 요건과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 사항을 비롯한 전체 세부 사항은 <u>지침</u>에서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기타 상황에서는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강력히 권장하며, 고용주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안면 가리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안면 가리개를 제공하거나 직원에게 합당한 안면 가리개 구매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에게 안면 가리개를 제공하거나 직원에게 합당한 안면 가리개 구매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는 직원이 질환으로 인해 이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최하단 가장 자리 부분에 길게 덮는 천(드레이프)이 부착된 안면 보호대와 같은 비제한적 대체품을 실행 가능한 경우, 그리고 해당 직원의 질환 상태가 이와 같은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제공해야합니다.

대중에게 개방된 업종은 <u>CDPH 얼굴 가리개(마스크) 관련 지침</u>에 있는 얼굴 가리개(마스크) 착용면제 경우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일반 대중의 어떤 <u>사람</u>도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 얼굴 가리개(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사업체는 고객, 의뢰인, 방문객 및 직원들중에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예외의 경우를 다루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 공간별 특정 계획

- 모든 사업장마다 업무 장소별 코로나 19 예방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업무 공간 및 업무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하며, 각 사업장마다 해당 계획을 시행할 담당자를 지정하십시오.
- <u>CDPH 안면 가리개 관련 지침</u>을 직장별 특정 계획에 반영하고 예외 사항에 대응하는 정책을 포함시킵니다.
- 직원들에게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보건부 연락처를 알아 두십시오.
- 직원 및 직원 대표와 직장별 계획에 관해 교육 및 전달하고, 직원 및 직원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계획 및 문서 내용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결함이 확인된 부분은 개선하십시오.
- 모든 COVID-19 관련 질병을 조사하여 작업 관련 요소가 감염 위험에 기여했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계획을 업데이트합니다.
- <u>CDPH 지침</u>에 따라 직장에 감염자가 발생했을 시 필요한 절차와 프로토콜을 시행합니다.
- 감염된 직원과 밀접하게 접촉(6피트 이내 15분 이상 동안)한 사람을 찾아내고 COVID-19 양성 직원을 격리하고 밀접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아래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COVID-19 발병을 초래하여 일시적으로 직장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의 주제

- <u>COVID-19</u>에 대한 정보 및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 COVID-19 감염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기저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 동물을 보유한 시설에서는 사람과 동물 사이의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 <u>CDC의 지침</u>을 적용하여 체온 및/또는 증상을 확인하는 등, 가정에서 자가 선별 검사를 실시합니다.
- 다음의 경우 출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발열, 오한, 숨 가쁨, 호흡곤란, 근육통,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손상 증상이 나타남, 인후통, 코막힘, 콧물, 구역질, 구토, 설사와 같이 CDC가 발표한 코로나 19 증상이 직원에게 나타난 경우 또는

- o 또는 직원이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았으며 아직 격리 해제되지 않은 경우
- o 지난 14일 이내에 코로나 19로 확진된 사람과 접촉한 적이 있고 잠재적인 감염자로 고려되는 직원(예: 여전히 격리 상태에 있음).
-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은 직원은 증상이 처음 발현한 이후 10일이 경과하고,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지난 72시간 동안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발열을 겪지 않은 경우에만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확진된 무증상 직원은 첫 번째 코로나 19 양성 판정 후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만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 흉부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을 포함하여 현기증 또는 창백한 입술이나 얼굴 등 증상이 심각해지는 경우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업데이트 및 자세한 내용은 CDC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초 동안 비누로 문지르는 등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의 중요성[또는 직원이 CDC 지침에 따라 개수대 또는 손 세정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60%의 에탄올(권장) 또는 70%의 이소프로판올(지켜보지 않는 동안에도 아동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둘 경우에만)을 함유한 손 소독제 사용].
- 근무 시간 및 근무 시간 외 물리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아래 물리적 거리두기 항목 참조).
-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안면 가리개 사용:
 - o 안면 가리개는 착용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가 아닙니다.
 - o 안면 가리개는 착용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리적 거리두기와 잦은 손 씻기 필요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o 안면 가리개는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이야 합니다.
 - o 직원은 얼굴 커버를 사용하거나 조절 후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합니다.
 - o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안면 가리개는 공유해서는 안 되며, 각 교대조 후 세척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 <u>안면 가리개 사용에 대한 CDPH 지침</u>에 포함된 정보로, 본 지침은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상황과 예외 상황을 비롯하여 안면 가리개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채택한 모든 정책과 업무 규칙, 관행을 규정합니다. 또한 교육에는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에 적용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주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독립 계약자, 임시직, 자원봉사자, 그리고 해당 시설의 기타 모든 유형의 근로자들은 코로나 19 예방 정책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필수 용품과 개인 보호 장비(PPE)를 갖추어야 합니다.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공급하는 조직과

사전에 이러한 책임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 유급 휴가 혜택에 대한 정보는 이를 받을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재정적으로 자택체류가 용이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의 코로나 19 관련 병가 및 산재 보상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여기에는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법 에 의거한 근로자의 병가 권리, 그리고 주지사의 행정 명령 N-62-20에 의거하여 해당 명령이 유효한 기간 동안 산재 보상혜택 및 코로나 19와의 업무 연관성 추정에 관한 근로자 권리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개별 통제 조치 및 선별 검사

- 교대 근무 시작 시 모든 직원(안내원, 인턴,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체온 및/또는 증상 선별 검사를 제공하십시오. 체온 점검/증상 선별 검사 담당자가 최대한 다른 직원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 자택에서 자가 선별 검사를 해야 하며 이러한 자가 선별 검사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선별 검사에 대한 적절한 대안인 경우,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해당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상기 직원 교육을 위한 주제 항목에서 설명한 대로 <u>CDC</u>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아프거나 코로나 19 증상을 보이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및 방문객은 자택에서 마무를 것을 권하십시오.
- 고용주는 필요에 따라 눈 보호 장비, 장갑 등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모든 필수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일회용 장갑 사용이 잦은 손 씻기와 손 소독제 사용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예: 증상 선별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이나 많은 사람이 만진 품목을 다루는 직원). 직원은 체액으로 오염된 물품을 다룰 때는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 사람들이 얼굴 가리개(마스크)를 사용해야 하고, 물리적 거리 두기를 반드시 실천해야 할 뿐 아니라, 최소 20초 동안 비누로 자주 손을 씻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며 얼굴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박물관에서는 입구에, 전략적으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그리고 예약 확인서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잊어버리시지 않게 고객들에게 미리 얼굴 가리개를 가져오셔야 한다고 알려 드리고 도착한 분 중에서 얼굴 가리개를 가져오시지 않은 분에게는 되도록이면 얼굴 가리개를 제공해 주십시오.
- 고객 및 방문객에게는 도착 즉시 체온 및/또는 증상에 대한 선별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얼굴 가리개(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얼굴 가리개(마스크) 없이 도착한 고객에게는 가리개(마스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 손님에게 적용되는 출입 조건에 대한 일련의 규정들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여 입구에 게시하십시오. 이 규정에는 손 소독제 사용, 방문 동안 얼굴 가리개(마스크) 착용, 직원 및 다른 손님/그룹과의 물리적 거리 유지, 불필요한 표면 접촉 자제, 현지 보건부 연락처, 그리고 서비스 변경에 대한 안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해당 규정은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픽토그램을 포함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 절차

- 가로대, 난간, 플래카드, 상호 소통식 전시물, 조명 스위치, 문 손잡이 등과 같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지면과 가까운 창문 섹션과 펜스 기둥 같이 소아가 접촉할 가능성이 더 높은 표면을 파악하여 소독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및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 직원 또는 대중이 사용하거나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실외 및 실내 영역을 철저하게 청소합니다. 여기에는 사무실 및 공용 업무 공간 중 사람이 붐비는 공간(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과 출입구 공간(난간, 계단, 엘리베이터 버튼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전화기, 태블릿, 양방향 무전기, 기타 작업 용품 또는 사무실 장비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PPE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 이와 같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 반드시 교대 시간 또는 사용한 전후에 적합한 세정제로 표면을 소독해 주시고, 복사기, 팩스, 프린터, 전화기, 키보드, 터미널, ATM 숫자판, 스테이플러, 스테이플러심 제거기, 응접실 내 시설의 표면, 공용 업무 장소,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마이크, 마이크 지지대, 믹서 보드, TV 모니터 등), 워키토키, 테이블과 의자, 페니 머신, 사진부스, 자판기 등은 더 자주 살균 처리 하십시오.
- 펜, 재사용 가능한 지도 등 작업자 및 손님 사이에 공유되는 도구를 닦고 소독하도록 지시합니다.
- 손님에게 일회용 지도, 팸플릿, 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가능한 경우 손님이 개인 전자 기기에서 볼 수 있도록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회용 품목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객 사용 전후에 재사용 제품을 적절히 소독하십시오.
- 장애인에 대한 시설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오디오 헤드셋, 유모차, 기타 장비를 손님에게 대여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매번 사용 후 적절히 소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장비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특히 폼 형태로 된 귀마개와 같은 부드러운 다공성 표면에 적합한 살균 절차를 정하십시오.
- 작업 장소 터미널에 손 소독제 및 살균 물티슈를 포함한 적절한 위생 제품을 비치하십시오.

- 직원과 손님을 위한 위생 시설이 항상 작동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비누, 종이 수건 및 손 소독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입문과 같이 사람이 자주 오가는 구역에 가능한 한 방문객을 위한 손 소독제와 이동식 세면기를 제공합니다.
- 되도록이면 무접촉 시계, 움직임 감지 조명, 자동 비누 디스펜서 및 페이퍼 타올 디스펜서 등의 핸즈프리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을 장려하십시오.
- 세척 소독용 화학물질을 선택할 때 고용주는 코로나 19에 대해 승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 에이전시(EPA) 승인 제품 지침을 따르며 이를 따르십시오. 새로 등장한 바이러스 병원체에 효과적인 것으로 표시된 소독제나 희석된 가정용 표백제 용액(물 1갤런당 5테이블스푼), 표면에 사용하기 적합한 최소 70% 알코올이 포함된 알코올 용액을 사용하십시오. 직원에게 화학물질 위험과 제조업체 지침, 환기 요건, 안전한 사용을 위한 Cal/OSHA 요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세척제 또는 소독제를 사용하는 직원은 제품 사용 설명서에 따라 장갑 및 기타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서 권장하는 <u>천식에 더안전한 세정</u> 방법을 따르고 적절하게 환기해야 합니다.
- <u>레지오넬라 페렴(Legionnaires' disease)</u> 및 기타 수인성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시간 시설 가동 중단 후 모든 수도 시스템 및 기능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u>조치를 취하십시오</u>.
- 가능한 경우, 병원균을 공기 중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기타 방법으로 바닥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고효율 미립자 공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HEPA) 필터가 있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십시오.
- 휴대용 고효율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고, 건물의 공기 필터를 최대한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며, 외부 공기의 유입량을 늘리고 모든 업무 공간의 환기량을 늘릴 수 있는 기타 변경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보십시오.
- 직원이 교대 근무 중 청소 방침을 실천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청소 업무는 직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일환으로 근무 시간 내로 배정해야 합니다.
- 작업 공간을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청소할 수 있게 적절하게 시간을 변경하십시오. 필요에 따라서는 제3자인 청소 업체에 외주 용역을 주는 방식을 이용하면 청소에 대해 충족시켜야 할 요건이 늘어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 직원과 손님, 대기하는 사람들 간에 최소 6피트 이상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합니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가림막, 플렉시글라스 장벽 또는 시각적인 표시 사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예: 손님이 서야 할 위치를 가리키는 바닥 표시 또는 표지판).
- 되도록이면 전시관, 갤러리, 전시 공간 출입 시 이용하는 입구와 출구를 다르게

지정하여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치는 경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전시관과 작업 공간 주변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교차흐름을 최소화하기 위해 되도록 도보 이동을 위한 통로, 복도 등을 편도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 입구와 대기 및 관람 장소 그리고 전시 공간 전체에 표지판을 게시하여, 사람들이 물리적 거리 두기, 얼굴 가리개(마스크) 사용, 올바른 손 위생 수칙에 대해 늘 잊지 않게 하십시오.
- 직원 및 방문객이 화장실과 복도와 같은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 가는 것을 자제하게 하십시오. 실내 및 야외 시설의 혼잡한 구역과 혼잡해지기 쉬운 구역에 직원을 배치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도록 고객을 안내하게 합니다.
- 최대 수용 인원 규정을 조정하여 박물관에 있는 사람 수를 적절히 제한하여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원합니다.
- 시간별 및/또는 사전 예약 발권 시스템을 구현하여 고객 방문에 시차를 확보하고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라이브 시연, 동물 쇼 등의 관람 공간을 재구성하여 가정 단위 사이에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연에 대한 사전 예약을 구현하고 가정을 적절한 관람 구역으로 안내하는 직원을 배정하십시오.
- 시설에 입장하는 고객 그룹을 가정 단위로 제한하십시오. 같은 가구의 사람들은 서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 여러 가정이나 다른 가정의 개인들을 동일한 투어 그룹에 결합하는 투어를 중단합니다. 투어 가이드는 최소 6피트 이상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좌석 구역, 테이블, 의자, 벤치 등을 재배열하거나 손님 간에 최소 6피트 정도의 물리적 거리를 허용하도록 좌석을 제거합니다. 손님에게 자신의 그룹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도록 고정된 공용 좌석(벤치 등)에 표지판을 게시합니다.
- 터치스크린, 손잡이, 버튼, 전화기 및 기타 청취 장치, 손으로 드는 소품, 플립 도어 등이 있는 인터랙티브 전시물은 제거, 폐쇄, 부분 폐쇄 또는 다른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일회용 스타일러스 펜, 일회용 커버의 제공을 고려하고, 직원에게 각 사용 후 표면을 모니터링하고 소독하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스테이션에는 손 세정제 및/또는 손 씻기 시설을 만들어 방문객에게 전시물과 상호 작용 전후에 사용하도록 요청하십시오. 특히 어린이가 적절한 소독 및 손 소독 없이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러한 전시물을 폐쇄하는 것을 강력히 고려하십시오.
- 실내 놀이터, 놀이 공간, 등반 구조물 등은 CDC 지침에 따라 폐쇄하십시오.
- 손님 및 다른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업무 방법 변경을 요청하는 직원, 안내원, 인턴 및 자원봉사 직원의 제안을 수락하는 쪽을 고려해 보십시오(예: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 관리로 변경 또는 원격 근무를 통해

행정적으로 필요한 업무 관리).

-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업무 관행을 활용하여 한 번에 작업 공간을 공유하는 직원수를 제한합니다. 일정 조정(예: 시작/종료 시간에 시간차 두기), 현장 보고 일자를 교대로 배정하기, 작업 공간 출근 복귀를 단계별로 시행하기, 또는 되도록이면 재택근무 계속하기 등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무실 공간, 작업 공간, 체크아웃 카운터 등을 재구성하여 작업 공간에 있는 동안 직원들이 최소 6피트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 휴게실을 재구성, 제한 또는 폐쇄하고 물리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대체 휴식 공간을 조성합니다. 동시에 엘리베이터에 타는 사람 수를 제한합니다.
- 시간차 교대 근무 직원은 임금 및 시간 규정을 준수하여 물리적 거리두기 절차를 유지합니다.
- 업무 현장에 물품 배달할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접촉되지 않게 합니다.
- 되도록이면 선반과 게시판 같은 운반 보조 용품을 설치하여 사람 사이에 물건을 직접 전달하는 일을 줄이십시오.
- 주차장을 재설계하여 모임 장소를 제한하고 적절한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예: 공간 또는 열을 하나씩 걸러 비우기, 비접촉식 결제 등).
- 가능하면 구내에서 이동할 때에는 차량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박물관, 갤러리,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무사항에 따라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셔틀 서비스를 제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u>코로나 19 복구</u> 로드맵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관련 운송 지침에 추가하여 본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취약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추가적인 준수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무용 업무 공간은 반드시 모든 Cal/OSHA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표준의 지침을 비롯하여 <u>미국</u>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u>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부(CDPH)</u>의 지침을 준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주는 이러한 지침의 변경 사항에 따라 운영 방침을 변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